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나788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나7886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가소148961 판결

###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장각

담당변호사 박지훈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이홍재

변론 종결2020. 5. 27.

판결 선고2020. 6. 17.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가소148961 판결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65,0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8. 피고의 대리점(판매점)에서 SM-G950N(이하 '휴대폰'이라 한다) 상품을 구입하면서 C 회선으로 피고의 개인고객으로 가입하였는데, 이 때 500MB+ 나눠쓰기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면 할인된 요금으로 태블릿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SM-T378L 상품(이하 '태블릿'이라 한다)도 함께 구입하면서 별도의 D 회선에 피고의 개인고객으로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의 개인고객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태블릿으로는 소액결제 서비스와 휴대폰 결제서비스(이하 '이 사건 결제서비스'라 한다)를 모두 이용하지 않도록 위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 그러나 태블릿에 대한 이 사건 결제서비스의 차단은 2019. 2. 7. 피고의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E휴대폰인증 또는 I-PIN인증에 의해 본인인증 절차(이하 '이 사건 본인인증 절차'라 한다)를 거친 뒤 변경되어 서비스 이용이 차단되지 않게 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차단 미동의'라 한다), 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본인 명의의 단말기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한편 원고는 휴대폰 회선에 관하여 2018. 11. 28. 휴대폰소액결제 중 일반결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결제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하였고(이하 아래 금액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이용료'라고 한다), 이 중 2019. 2.부터는 태블릿 회선으로 이용한 금액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2019. 4.까지의 이용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                               |                  |         |
|-------------------------------|------------------|---------|
| 2018. 12.                     | E모바일tv 유료콘텐츠 이용료 | 47,600원 |
| E모바일tv 유료콘텐츠 이용료(휴대폰 회선으로 이용) | 47,600원          |         |

|                               |                  |          |
|-------------------------------|------------------|----------|
| 2018. 12.                     | E모바일tv 유료콘텐츠 이용료 | 47,600원  |
| 2019. 1.                      | E모바일tv 유료콘텐츠 이용료 | 32,200원  |
| E모바일tv 유료콘텐츠 이용료(휴대폰 회선으로 이용) | 32,200원          |          |
| 2019. 2.                      | 구글Play스토어이용료     | 234,400원 |
| E모바일tv 유료콘텐츠 이용료              | 146,300원         |          |
| E모바일tv CJ ENM 월정액             | 13,000원          |          |
| 2019. 3.                      | 구글Play스토어이용료     | 159,900원 |
| E모바일tv 유료콘텐츠 이용료              | 54,900원          |          |
| 2019. 4.                      | 구글Play스토어이용료     | 420,669원 |
| E모바일tv 유료콘텐츠 이용료              | 111,800원         |          |
| 2019. 5.                      | 구글Play스토어이용료     | 487,487원 |
| E모바일tv 유료콘텐츠 이용료              | 53,790원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에 대하여 태블릿에 의해서는 이 사건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분부터 2019. 6.분까지의 이용요금에 이 사건 결제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 이후 원고가 태블릿에 관하여 이 사건 차단미동의를 신청한 적이 없고, 가사 태블릿에 관하여 이 사건 차단미동의를 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태블릿 이용 계약은 휴대폰 이용 계약에 종속되는 것이어서 휴대폰 회선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이 사건 차단미동의를 가능할 뿐인데, 이 사건 본인인증 절차는 원고의 자녀가 사용하던 태블릿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결제서비스 차단 해지는 효력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제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하여 과다하게 이용요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지급한 이용요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 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2.부터 2019. 4.까지의 이 사건 이용료를 모두 납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태블릿에 관하여 이 사건 결제서비스 차단에 동의하였는데 2019. 2. 7. 태블릿에서 이 사건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차단미동의가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용료가 부과되었다거나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차단미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2, 4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휴대폰을 이용하여서만 이 사건 차단미동의를 위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거나 다회선 고객으로서 대표회선으로 휴대폰 회선을 매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에 휴대폰 회선 번호가 기재된 것만으로 이 사건 본인인증 절차를 휴대폰 회선 번호로만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태블릿에 관하여 피고의 개인고객으로 가입한 원고 명의의 회선으로 이 사건 본인인증 절차가 이루어져 이 사건 차단미동의가 신청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수신된 이 사건 차단미동의 의사표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차단미동의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후 이 사건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료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이용료 상당액의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한미**

판사김우현

판사허일승